

한국정보과학회 소사이어티 설치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과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조 3항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분과 소사이어티(이하 소사이어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소사이어티 명칭은 한국정보과학회 ○○○소사이어티로 한다.

제 3 조(임무)

소사이어티는 학회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으며, 최소 활동 의무로 연간 2회 학술행사 개최 및 논문을 게재하는 소사이어티 회지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 4 조(설치)

1. 소사이어티는 본회 정회원 200인 이상으로 구성된 분과연구회 또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2개 이상의 분과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소사이어티 설치하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서 최근 3년간의 활동실적과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사이어티 설치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분과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사이어티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회원자격)

1. 본회 회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관심 있는 소사이어티에 소속할 수 있다.
2. 소사이어티 설치에 참여한 분과연구회 회원은 해당 소사이어티에 소속할 수 있다.

제 6 조(기구)

소사이어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소사이어티 총회
2. 소사이어티 이사회

제 7 조(이사회구성)

소사이어티는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구성한다.

1. 소사이어티 회장
2. 소사이어티 부회장
3. 소사이어티 이사
4. 소사이어티 감사

제 8 조(이사회 임원의 선출)

소사이어티 이사회 임원은 소사이어티 총회 또는 소사이어티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9 조(사업운영)

소사이어티에서 결의된 사업은 본회 회장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

제 10 조(재정)

소사이어티 재정은 소사이어티 회원의 일정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1 조(사업보고)

소사이어티 회장은 본회 정기총회 전 본회 이사회에 연간 활동사항(실적, 계획) 및 경비수지(예산, 결산)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회칙제정)

각 소사이어티 회칙은 별도 제정하여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13 조(해산)

1. 소사이어티 해산은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소사이어티 회장은 즉시 이를 본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회 회장은 소사이어티 활동이 부진하거나, 제3조 또는 제4조 1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제11조의 본회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시킬 수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된 날(2007년 6월 26일) 이후 정관 개정이 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된 날(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 소사이어티는 연 1회 이상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